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	규정번호	3-8-27
		제정일자	2015.03.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 전임교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실시 및 시기) 자체영향평가는 매년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제8조(결과의 공시) 법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9조(적용대상) 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형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실기고사(예·체능)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